

제 호

위생교육기관 지정서

기관명:

소재지:

대표자:

교육 과정명:

조건: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직인

(뒤쪽)

<변경 및 처분사항>

[illegible]